

### 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9년 01월 31일

농소2동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박**	박** 1967-11-16	울산광역시 북구 이화5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9-01-17

